

희생채권 · 희생담보권 · 주식 신고 안내 공고

당사는 2020년 3월 13일자로 서울희생법원 제14부의 결정에 의하여 희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희생채권 · 희생담보권 ·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희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희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희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(당사전담반 ☎ 02-2001-0072, 02-2001-0119로 전화요망), 희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채무자회사 당사전담반에 문의하시어 배부 받으시길 바랍니다. 희생절차개시결정문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'공고'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1. 채권신고자의 범위 : 희생채권 · 희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
 2. 채권 신고기간 : **2020년 3월 28일 ~ 2020년 4월 10일 (09:00~18:00 / 12시~13시 점심시간)**
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3. 채권 신고처 : 서울희생법원 파산과 (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)
 -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희생법원 파산과 종합민원실
 -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(예: 회송용 민원우편)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(우표첨부)
 4.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: 첨부된 「희생채권 · 희생담보권 ·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」 참조
 5.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전담반 및 거래 지점(부서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2-2001-0072, 02-2001-0119)
- ※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,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시기 바라며, 법원담당자에는 당사전담반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- ※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,3회관제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.

채무자 한류타임즈(주)의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종철